

기록이란 무엇인가?*

활동의 고정적 재현물로서의 개념 탐구

Exploring the Concepts of Records as Persistent Representation of Activities

설문원(Seol, Moon-won)**

1. 서론
2. 기록의 정의(definition)
 - 1) 증거
 - 2) 정보
 - 3) 활동의 지속적 재현물
3. 활동의 재현물로서 기록의 속성
 - 1) 물질성(materiality)
 - 2) 고정성(fixity)
 - 3) 활동 재현의 메커니즘과 맥락
 - 4) 재현의 신빙성(trustworthiness)
4. 맺음말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의 내용 일부는 제123회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회(2018.6.9)에서 발표한 것임을 밝힘.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투고일 : 2018년 12월 31일 ■ 최초심사일 : 2019년 1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1월 23일

〈초록〉

이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의 본질과 개념적 정의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록에 대한 정의(definition)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기록의 정의를 증거, 정보, 활동의 재현물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특히 각 정의의 근거가 되는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기록의 개념과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프리 여의 “활동의 지속적 재현물”이라는 정의를 중심으로 네 개의 분석 영역을 도출하고 각 영역을 둘러싼 논의를 분석하였다. 기록이 활동의 고정적 재현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고정성(fixity)을 도출하고, 고정성이 물질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물질성(materiality)을 설정하였다. 또한 활동은 어떻게 기록이라는 재현물로 표현되며 그러한 재현물을 통해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하여 활동과 맥락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고, 그렇게 존재하는 재현물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빙성(trustworthiness)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 기록의 정의, 증거, 정보, 기억, 재현물, 고정성, 물질성, 신빙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ncepts and nature of records in digital environments based on analyzing recent theoretical studies of records. This is not intended to defining records for management in a specific environment.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parts. Firstly, it classifies the definitions of records in three perspectives; evidence, information, and representation of activities, and explores the concept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underlying each definition. Secondly, it articulates some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concept and nature of records in digital environments by four categories such as i) fixity, ii) materiality, iii) activity and context, and iv) trustworthiness, which were

derived from the definition of “persistent representation of activities” by Geoffrey Yeo.

Keywords : definition of records, evidence, information, memory, representation, fixity, materiality, trustworthiness

1. 서론

1) 우리는 왜 기록을 정의해야 하는가?

기록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은 채 기록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막상 기록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기록학 문헌들이 기록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에서 시작하지만, 그 정의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기록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은 관리 대상은 물론 관리 방법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록관리 실무와 정책을 담당하는 집단이나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다(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 ‘업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정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 생산 및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정의만으로 기록관리를 실행하거나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졌다. 현실에서는 업무과정에서 생산·접수되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기록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록관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모든 데이터나 정보를 기록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한편 최근 들어 기록과 관련된 많은 법규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록의 생

산 및 생산시스템과 관련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전자정부법이 있다. 기록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기록의 비밀정보 관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야 하고,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은 기록의 활용 및 개방에 깊이 관련될 여지가 있다. 기록의 포괄적 정의를 적용하면 이들 법규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데이터는 모두 기록이다. 각 법률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법률 집행과정에서 공공기록물관리와 중첩되거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각 법규 집행과정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경쟁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록관리의 영역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록의 본질과 개념에 대한 지식 토대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록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록의 개념과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기록관리 및 기록학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영국의 기록학자 제프리 여(Geoffrey Yeo)는 기록관리에 종사하는 전문직 공동체 안에서도 기록의 본질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가령, 보존기록전문가(archivists)와 현용기록전문가(records managers) 간에도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학문적 배경이 기록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Yeo 2007). 대체로 기록이 개인이나 가족, 그룹, 조직의 '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밖에는 합의된 의견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모든 사람이 기록에 대한 똑같은 정의와 개념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 기록전문직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러나 날로 변화하는 업무 및 기록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의 이론 및 방법론에 대한 학습과 함께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이론과 방법론이 전제하고 있는 기록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개념은 모든 이론의 출발점이다. 기록관리의 현상과 학계가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기록전문가들이 일종의 실행공

동체(community of practice)¹⁾를 형성하여 기록관리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나누면서 서로의 지식이나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기록의 본질과 개념에 대한 ‘공통의 이해 기반’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2) 정책적 정의와 개념적 정의

디지털환경에서 기록이 무엇인지 규정해야 할 필요성으로 흔히 거론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 생산 환경의 변화다. 조직의 정보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는 가운데 생산·저장되는 방식·위치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관의 문서관리시스템이나 EMC, 기타 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저장장치, 직원 개인의 기기(개인 컴퓨터, 스마트폰), 기관의 물리적 보관소, 외주업체의 저장시스템 등 조직의 많은 정보가 분산적으로 존재하고 더욱이 제3자의 수중에 있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중 일부는 통제 자체가 되지 않으며 활용에 제약이 되고 위험 노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SD 2014).

둘째, 설명책임성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록이 업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지 사전에 설정하고, 조직 및 사회적 차원에서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규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업무 활동과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과 규정이 존재하며,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서로 상충되는 규제도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 기록의 생산 및 보존, 공개와 관련된 법규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법규와 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을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조사하고 대처해야 하는데(Kahn Consulting 2013),

1) Yeo는 앞의 글에서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도록 학습된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정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경영학이나 조직학에서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나누면서 서로의 지식이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비공식 집단”이라는 정의가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기록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각 조직의 기록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인 ARMA의 정보 거버넌스 성숙도 모형(Maturity Model : IGMM)을 보면, 그 첫 번째 요건으로 “조직이 관리해야 할 기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조직이 관리해야 할 기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만 기록관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 1>은 어떤 조직이 기록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다.

<표 1> 기록 판정을 위한 기준 (기업 사례)

영역	체크리스트
법규/컴플라이언스	내외 규정이나 법률에 그 정보를 보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가?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규제기관이 보낸 공식 업무 관련 보이스메일 메시지인가?
업무/재무/법무	현재 혹은 장래 업무에 활용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업무 진행 및 추진의 근거가 되는가?
	계약 협상에 사용된 인스턴트 메시지는이다.
	그 자료에 담긴 정보에 근거하여 판매 예측이 이루어진다.
	계약서 최종본이다.
역사/기억	경제적, 법적 권한 보호에 필요한 정보인가?
	기업의 역사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가?

※출처 : Kahn & Blair 2009. p. 21의 내용 편집.

그런데 기록의 개념을 찾고 이를 토대로 기록을 정의하는 것과 특정한 조직 환경에서 관리대상으로 기록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사뭇 다른 일이다. 위에서 거론한 세 가지 배경은 모두 특정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기록을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며, <표 1>은 특정한 조직 환경에서 기록을 규정하는 정책적 기준에 해당한다. 물론 공공기록관리 영역에서 어떤 것이 기록인지를 정책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록학, 특히 평가론의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념적 정의는 이러한 정책적 정의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는 기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영역이며 기록학의 흐름을 관통하는 주제라고도 볼 수 있다. 정책적 정의에 앞서, 기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있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관리에서 주안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정보관리나 데이터관리와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록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본질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3)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 연구는 기록에 대한 최종적인 정의(definition)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특히 관리대상으로서 기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정의를 다루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의 본질 탐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의 개념과 속성을 중점적으로 다룬 최근의 연구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록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증거, 정보, 활동의 재현물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특히 각 정의의 근거가 되는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기록의 개념과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프리 여의 “활동의 지속적 재현물(persistent representation of activities)”이라는 정의와 기록이 업무행위의 “고정화된 재현”이라는 ISO 16175-3의 개념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이를 분석하였다(그림 2 참조). 첫째,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고정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고정성의 전제로서 물질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셋째, 활동은 어떻게 기록으로 재현될 수 있으며, 기록이라는 재현물을 통해 활동을 이해할 수 있

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넷째, 그렇게 존재하는 기록이라는 재현물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기록의 정의(definition)

1) 증거

기록의 정의는 개인이나 조직 활동의 증거, 정보, 기억, 과거의 재현물(representation)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래도 기록의 정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는 ‘증거’이다. 서구에서 ‘기록(records)’은 원래 법률 용어로서 “법원이 종료된 소송의 완벽한 증거(authentic testimony)로서 취급하여 보관하는 서류”를 의미하였다(Shepherd & Yeo 2003, ch. 1). 서양 고문서학(diplomatics)에서 기록은 “법적 성격을 갖는 사실에 대한 성문화된 증거이고, 정해진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완벽한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Duranti 2002).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정의이다. 문서학의 이러한 규정은 ISO 15489-1에서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기록의 ‘특성(characteristics)’으로 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좋은 기록관리를 통해 성취해야 할 ‘품질’이 아니라 기록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성’으로 정의하는 것은 기록에 대한 서양 고문서학의 엄격한 기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ISO 15489-1 개정판(2016)에서는 그러한 엄격성이 완화되어 ‘기록’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록(authoritative records)’의 특성으로 수정되었다(ISO 15489-1 : 2016, 5.2.2).

일찍이 켄킨슨(Hilary Jenkinson)은 이상적인 아키비스트를 ‘증거의 신성함(Sanctity of Evidence)’에 헌신하는 자이며, “문서(Document) 안에 있는 증거의 모든 파편을 수호할 책임을 지는 자”로 묘사한 바 있다. 켄킨슨은

또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기록(archives)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증거이다. 우리는 우리의 나태함이나 불안전성으로 인하여 기록의 진술이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는 있으나, 기록 그 자체는 우리에게 사실이나 오류를 납득시키거나 설득하기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기록은 단지 우리에게 말해 줄 뿐이다”(Jenkinson 1984; Anderson 2014에서 재인용).

현대 기록학 문헌에서는 “활동의 증거로서 기록된 모든 것(any recorded evidence of activity)”이라는 정의가 등장한다(Shepherd & Yeo 2003). ARMA는 기록(records)을 계약서, 협상 문서, 업무 서신, 인사 파일, 재무 서류 등과 같이 업무 행위나 활동을 담고 있는 조직 활동의 증거(evidence of what an organization do)로 정의한다. 여기서 증거는 법률적 개념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록은 어떤 활동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가능한 증거를 제공한다. 증거의 개념이 보다 확장된 것이다. 서양 고문서학에서는 기록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취급하지만(Duranti 2002, 9), 활동의 증거는 기록집합체가 형성되는 구조와 집합체 간의 관계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기록학사를 볼 때 증거 관점의 기록 정의가 일관되게 견지되어 온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흐름은 “기록의 증거적 역할은 켄킨슨 등의 선구자들의 저작을 통해 부상하였으나 쉘렌버그(Theodore Schellenberg)에 의해 뒤집혔고 피츠버그 프로젝트에서 재조명되기 전까지 거의 잊혔다”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Yeo 2007). 쉘렌버그는 증거와 함께 정보를 강조하고, 증거를 정보의 일부로 간주함으로써 기록에서 증거의 의미를 희석시켰다. 피츠버그 프로젝트 이후에야 기록의 본질이 증거적 속성에 있다는 인식이 특히 호주 기록관리 사상의 특징이 되었고, 이는 기록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각국의 국가표준에 반영되었다.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기록학자들이 증거 중심의 기록 개념화, 혹은 개념화 자체에 문제

를 제기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문헌에서 여전히 증거에 입각한 개념 규정이 지배적이다.

또한 기록을 정의할 때 증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나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기록은 “데이터, 사실, 정보 이상의 것이다. 기록은 증거다”(The State Records Authority of New South Wales)라는 식의 표현은 기록학 문헌이나 웹사이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기록은 행위나 의사결정의 증거다”라는 정의에도 “의식적으로 사실, 지식, 의견, 사상을 확산하기 위해 고안된 정보 산출물”과 구분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Yeo 2007). 때로는 기록이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다루는 자원과 다르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하여 ‘증거’를 일종의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록의 정의에서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내용은 다른 경우가 많다. 증거 관점에서의 기록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록이 증거의 일종이라는 입장이며, 둘째, 증거는 기록이 제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Yeo 2007).

우선 기록이 증거의 일종이라는 관점을 살펴보자. 기록을 다른 증거와 구분하면서 기록을 증거의 일종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법정에서는 피 묻은 총, DNA 조각, 구술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역사학자들은 건축물, 풍경, 도시 지형 등에서 증거를 발견한다. 토양 속에 새겨진 무늬는 고고학자들에게 인류 거주에 관한 증거가 된다. 이들 중 어떤 것도 우리가 아는 기록은 아니다. 또 어떤 증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관계된다. 연기는 불이 나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며, 소리와 그림자는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의 증거를 나타낸다. 가이저 계수기의 딸깍 소리는 방사능의 존재를 나타낸다. 온도계와 연료계의 눈금과 같이, 이들 모두는 증거이지만 기록은 아니다. 기록된 사건이 1시간 전의 것이든 5세기 이전의 것이든, 기록은 항상 과거를 가리킨다(Yeo 2007). 즉 현재를 말해주는 증거는 대체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다.

증거는 행위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 주장과 가설을 증명하거

나 반박하기 위해서 활용된다. 증거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거나 어떤 명제를 확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증거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거나,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것이 사실인 이유를 설명하거나, 청중으로 하여금 그것이 진실이라고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이 바로 기록의 역할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기록은 증거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는 기록과 증거가 같은 온톨로지적 범주에 속할 수 없다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Yeo 2007). 기록(record)은 가산명사이다. 우리는 1, 2, 3, 혹은 20개의 기록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증거는 불가산명사이다. 현대영어에서 evidence라는 단어에는 복수형이 없으며, 증거에 대하여 “몇 개?”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보면, 셀 수 있는 개체가 셀 수 없는 속(genus)에 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강(river)이 물(water)의 일종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기록이 증거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증거’라는 개념은 ‘스스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자 하는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된다. 이때 관계는 일종의 추론적 관계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을 말할 때, 추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 또는 행위들의 집합에 상응하는” 개체로서, 일정한 공간과 시간에 묶인 특정 개체로 본다(Duranti 2002). 이렇게 증거를 두 사실 간의 관계라고 정의한다면 기록을 증거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Yeo 2007).

두 번째, 증거는 기록이 제공하는 ‘무엇’이며, ‘기록을 이용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록이 “사건의 지속적인(lasting) 증거를 제공한다”고 표현하거나(Dearstyne 1994, 1), “기록은 기록을 생산하거나 접수하도록 만든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내용, 맥락,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의에서 드러난다(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1997). 특히 브로스맨(Brien Brothman)은 증거가 기록의 ‘이용’에서 생성된다는 관점을 옹호한다. 증거는 “단순히 존재하거나 개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록을 발견하고 이용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Brothman 2002).

2) 정보

기록을 “정보와 뚜렷이 구분되는 범주”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Yeo 2007, 326), 국제 표준 등에서의 정의는 정보 관점에서 있다. 국제기록기술 규칙(International Standard for Archival Description)에서는 기록을 “형태나 매체와 관계없이 업무 또는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이나 개인이 생산 접수 유지하는 기록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ISO 15489-1 : 2016에서는 기록을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로서 그리고 자산으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증거와 정보의 개념을 연결시키고 있지만 기록을 포괄하는 용어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Yeo 2007). 대개는 기록이 정보의 일종이지만 다른 종류의 정보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포함된다. 기록을 다른 종류의 정보와 구분하기 위하여 생산이나 접수환경이나 내용, 맥락,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특징을 덧붙이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록이 정보의 일종인지, 아니면 정보는 기록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무엇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를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아야 한다(Yeo 2007).

첫째, 정보를 메시지로 인식하는 경우다. 내용, 또는 내용이 담고 있는 아이디어, 주장, 명제 같은 것들이다. 이때 메시지는 추상적인(intangible)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 매체에 담겨 있지만, 사람들의 정신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누군가에게 전달(communicated)되는 메시지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는 “알려지거나 말로 전달된 것”이며, 첩보(intelligence)나 뉴스다. 이런 점에서 정보는 데이터와 비교되는데, 정보는 원천 데이터(raw data)의 처리와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둘째, 정보를 커뮤니케이션이나 문제해결의 과정으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정보는 구체적(tangible)이건 추상적(intangible)이건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instrument)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로 간주된다. 샤논(Claude Shannon)과 위버(Warren Weaver)의 정보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많은 저자들이 정보를 “불확실성의 감소”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보를 과정으로 보거나, 알려지는(informed) 과정에서 비롯된 상태라고 인식하는 이들도 있다(정동열, 조찬식 2007, 5-11).

셋째, 정보를 “물건(thing)”, 즉 메시지가 부호화된 자료 형태라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보(information)는 뭔가를 알려주는(informative) 것으로 간주되는 객체(object)에 한정”되어 사용되는데, 이는 “정보자원관리” 분야의 지배적인 관점으로 정보를 정량화되는 자원이나 식별되고 분류될 수 있는 물건(commodity)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Yeo 2007, 328). 기록이 정보의 일종이라고 주장과 양립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시각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정보를 매체(carrier)와 혼동하는 것이며, 정보는 물리적 매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렇게 ‘정보’의 개념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보와 기록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많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보를 추상적인 내용(intangible content)으로 간주할 경우 기록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관점, 또는 기록을 이용함으로써 정보가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을 선호할 것이다.

기록이 정보의 일종이라는 정의를 받아들인다 해도 기록관리나 기록관 시스템이 ‘다른 종류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과 이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과는 달라야한다는 점에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기록관리시스템이 정보관리시스템이나 지식관리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셰퍼드와 여(Shepherd & Yeo)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의 증거 가치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며, 이러한 특징이 정보관리시스템이나 지식관리시스템과의 차이라는 것이다(Shepherd & Yeo 2003). 따라서 기법 상 공유하는 부분이 많지만 기록관리는 정보관리와 지식관리와는 다른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와 함께 활동의 증거를 제공하는 기록과 단지 정보적 목적으로 생산되는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달라야 하며, 따라서 기록 관리에서는 기록의 증거가치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이 생성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면서 기록 관리에도 수많은 정보관리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정보관리와 기록관리를 구분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증거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위해 ‘맥락의 보호와 재구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프리 여는 최근의 저서에서 쿡(T. Cook)이 설계한 네 가지 기록관리 패러다임(증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에 이어서 다섯 번째 패러다임은 ‘정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ISO 15489-1과 같은 국제 표준에 이미 정보에 입각한 정의를 채택하였고, 기록을 정보객체로 보는 기록학 문헌들이 많아지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Yeo 2018, ch. 2).

3) 활동의 지속적 재현물

기록은 정보도 증거도 아니며, 증거와 정보는 기록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시각의 근저에는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강조하는 쉘렌버그의 기록 평가 모델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의 텍스트에서 읽힐 수 있는 것은 정보라고 일컬어진다. ... 행간에서, 또는 표시(signs), 상징, 심지어 텍스트의 구성(compositions)에서도 읽힐 수 있는 것이...증거다”라는 맨하리츠(Angelika Menne-Haritz)의 주장에도 이러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Yeo 2007에서 재인용). 기록이 그 안에 담긴 내용과 구조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와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제프리 여(Yeo 2007)는 기록을 정보나 증거의 일종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새로운 개념정의를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록이 제공하는 것이 증거와 정보뿐이 아니라

는 것이다. 이용자는 기록의 심미적 속성, 유형성(tangibility), 물리적 형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로부터 감흥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록을 정보나 증거로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는 기록의 실물가치(intrinsic value)와 관련된다. 또한 어떤 이용자는 기록과 특정 개인, 조직, 장소, 사건과의 상징적 연관성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다(O’Toole 1993). 기록이 제공하는 이러한 효용은 증거와 정보와는 연관성이 약할 수 있으며 주로 기록을 객체 또는 인공물로서 지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여는 기록이 정보나 증거 외에도 매우 다양한 것들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어포던스(afford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쉘렌버그가 사용했던 기록의 ‘가치’라는 용어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포던스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어포던스는 신조어로 “자원이 제공하는 특성과 기능”(Yeo 2007), 혹은 물건(object)과 사람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 따라서 제시될 수 있는 사용(uses), 동작(actions), 기능(functions)의 연계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²⁾ 이용자와 기록의 어떤 관계에 따라, 다시 말해 이용자가 기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록의 다양한 어포던스가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증거와 정보 외에 기록의 다른 어포던스를 “기억, 설명책임성, 권력의 합법화, 개인적·사회적 정체성과 지속성,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넘어 그것들을 소통시키는 것”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해석을 통해 기록의 의미를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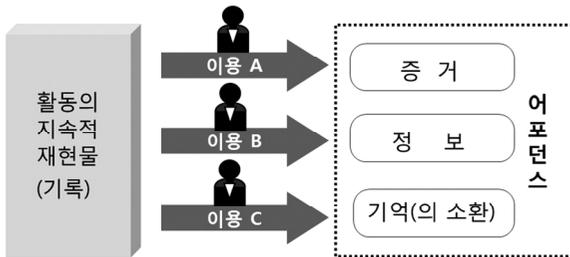
증거나 정보 외에 기록이 주는 강력한 어포던스가 기억이다. 기록은 ‘기억의 원천’이라거나 “인간 기억의 확장”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이러한 기록은 집단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기록은 한 인간의 정신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기록은 공동체와 그 일원인 개인이 기록이 아니

2) 어포던스는 어떤 행동을 유도한다는 뜻으로 행동유도성이라고도 함. 어포드(Afford)는 원래 ‘~할 여유가 있다, ~을 공급하다, 산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어포던스는 보통 사전에 없는 용어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인지 심리학, 산업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환경 심리학, 인공지능학 분야에서 ‘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하는 것’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함. 위키백과. 2017. 1.10 인용.

었다면 잊혔거나 불완전하게 기억되었을 만한 것들을 떠올리게 해 준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한 개인적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기록은 기억을 강화하거나, 기억에 대항한다. 후대 사람들에게 기록은 기억의 대체 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기억으로서의 가치와 증거나 정보로서의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모든 어포던스들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상호의존적이다. 기억의 개념에는 “과거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retrieve) 능력”이 포함된다. 정보는 증거의 한 구성요소로 볼 수도 있지만 증거의 결과물(outcome)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증거 제시를 통해 과거에 미심쩍었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는 기억을 입증해 줄 수 있으며, 기억이 변조되는 것을 막아 준다. 증거는 기록을 생산하게끔 하는 행위의 기억을 지탱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기록이 생산, 유지, 활용되는 세계의 다른 측면의 기억 들 또한 입증해 준다. 기록의 상징적 어포던스들 역시 기억과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이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1〉 활동의 지속적 재현으로서 기록의 개념



제프리 예(Yeo)는 기록이 가진 다양한 어포던스를 고려하고, 증거나 정보라는 용어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때문에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기록

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였다. 그는 “활동의 지속적 재현”으로 기록을 정의하였다. 그의 개념을 <그림 1>과 같이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용자에 따라 기록은 정보, 증거, 기억의 소환이나 보강 외에도 무수히 많은 어포던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재현은 예술, 컴퓨터공학, 영화, 역사, 언어, 수학, 철학, 심리학, 기호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온 주제이다. 재현이란 “다른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이 나타내는 것과 관련성을 갖는다. 가령 인체를 표현하는 조각, 사람들의 일상을 표현하는 소설은 모두 재현물로 볼 수 있다. 기록은 어떤 활동을 가리키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활동을 표현하는 재현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이라는 재현물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많은 재현물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모두 기록은 아니다. 고요한 연못 수면에 비친 달은 하나의 재현물일 수 있지만 기록은 아니다. 도로 표지판의 그래픽 디자인도 재현물이지만 기록이 아니다. 모형, 조각상, 사진, 연극 공연, 일러스트레이션 등 재현물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기록을 다른 종류의 재현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는 기록을 “활동에 참여하였거나 활동을 목격한 사람들, 또는 그들의 공인된 대리인이 생산한, 활동의 지속적인 재현물”로 기술하였다 (Yeo 2007). 또한 기록이라는 재현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기록은 지속성(persistence)을 갖는다. 모든 재현물이 지속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연못에 비추어진 것, 자동차 속도계의 눈금 등은 저장되지 않으며 이것들은 지속적이지 않다. 지속적인 재현물은 그것을 만들어낸 일시적인 환경을 뛰어넘어 지속될 역량을 갖춘 것을 말한다. 지속성이 영구적으로 존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기록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으며, 기록을 폐기한다는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은 기록이 재현하는 활동이 시간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속성이 있다. 기록의 이러한 내구성(durability)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공유되고 전달될 가능성을 부여하게 된다.

둘째, 무엇을 재현하는가의 문제인데 기록은 활동의 재현물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모든 재현물이 활동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조각상, 거리 표지판, 달력은 모두 지속적 재현물의 사례가 될 수 있지만 기록과 달리 이것들은 활동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록이 표현하는 활동은 업무활동(business transaction)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위들을 포괄한다. 기록은 거의 모든 활동을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인간의 지시에 따라 기계장치가 수행한 활동도 포함된다.

기록을 재현으로 보는 관점은 학제적인 동시에 넓은 스펙트럼의 지식을 포용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증거에 대한 강조는 주로 기록관리를 법률과 조직의 통제(corporate governance)와 연결시키게 되며, 정보에 대한 강조는 사서직 업무나 전산업무에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다. 기억에 대한 집중은 아마도 역사학이나 문화적 정체성과의 연결을 암시할 것이다. 이 모든 관점들은 타당하지만, 포괄적이지 않다는 제약을 가진다는 것이다. 기록이 가진 복합적이고 풍부한 가치를 고려할 때 재현물이라는 용어가 기록의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다는 제프리 여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시한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논문이나 문헌이 많지는 않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록의 본질을 잘 표현한다는 점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제프리의 여의 ‘지속적 재현(persistent representation)’이라는 정의 중 ‘지속성’은 고정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ISO 16175-3에서는 고정성을 기록의 본질적 속성으로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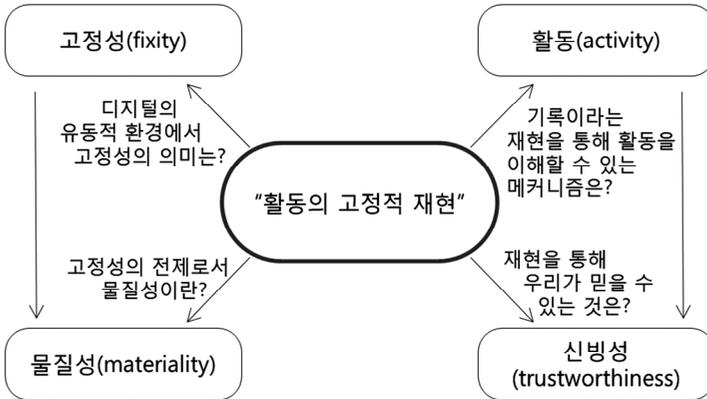
“기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록의 내용이 고정화된 형식(fixed form)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록은 업무행위의 고정화된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수시로 갱신되는 역동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는 업무시스템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KS X ISO 16175-3, 4)

요약하자면, 증거, 정보 등은 어떤 활동에 대한 고정적인 재현물로서 기록이 제공하는 어포던스이며 용도나 이용자에 따라 그 어포던스는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활동의 재현물로서 기록의 속성

3장에서는 기록이 활동의 고정적 재현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기록의 본질적 속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활동의 고정적 재현으로서 기록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한 범주를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활동의 고정적 재현”으로서 기록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한 범주



먼저 살펴볼 속성은 ‘고정성’이다. 그런데 고정성은 물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고정된다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 묶어둔다는 것인데, 물질성에 기반하지 않은 고정성이 존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기록을 ‘논리적 개체’로 보는 시각에서 물질성은 다만 아날로그 기록

의 특성일 뿐이다. 따라서 고정성에 앞서서 디지털 물질성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앞의 정의에서 핵심키워드는 ‘활동’이다. 활동은 어떻게 기록이라는 물리적 재현물로 표현되며 기록을 통해 우리가 활동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핵심 분석 대상은 맥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는 재현물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활동의 ‘무엇’인지도 알아보았다. 이러한 접근이 궁극적으로 정보관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다.

1) 물질성(materiality)

우리나라 기록관리계에서도 오랫동안 ‘기록’과 ‘기록물’이라는 용어 사용에 갈등이 존재해 왔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전자적 형태의 기록은 논리적 개체이기 때문에 ‘전자기록물’이라는 용어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었다. 그러나 기록이 행위로서의 의미와, 행위의 결과물로서 의미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록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적 입장이 미묘하게 대립하였고, 현재 법률에서는 전자 형태인 경우에도 ‘기록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기록은 물질성을 가지지 않는 것인가? 영국의 정보학자 플로리디는 “아날로그 기록은 물질이고 디지털 기록은 비물질이라는 이분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Glaudemans, Jonker & Smith 2017b). 다만 디지털의 물질성과 아날로그의 물질성이 다를 뿐이며, 물질성을 유체성(tangibility)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물질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기록학자 애커(Amelia Acker)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물질성(materiality)은 새로운 전자 포맷의 맥락, 내용, 출처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데, 기록학계가 전자기록을 물리적 속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기록의 디지털 물질성에 대한 연구에 큰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한다 (Acker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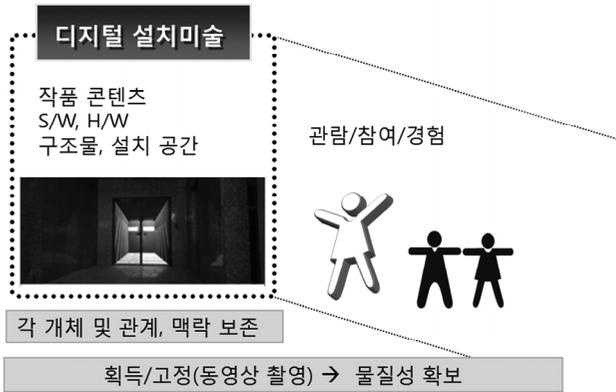
에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의 성격을 ‘개념적 구성물’로 보는 연구들은 많았지만 저장 메모리나 장치와 같은 물리적 제약이 있는 시스템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성을 지닌 사물로 기록을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했다고 평가하였다. 쉘렌버그의 평가 모델 이후로 북미의 많은 아키비스트들은 기록의 정보 전달 능력과 증거로서의 능력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자기록관리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에서도 전자기록의 물질성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전자기록관리에 관한 중요 프로젝트인 피츠버그 전자기록 프로젝트(이하 피츠버그 프로젝트)와 UBC-MAS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모두 주로 논리적 개념으로서 증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전자 기록의 물질성은 과소평가되었다고 지적한다(앞글). 당시까지 기록은 논리적(디지털기록)이거나 ‘혹은’ 물리적인 개체(아날로그 기록)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기록연속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디지털기록이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특성을 함께 지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여기에 더해서 티보도(Kenneth Thibodeau)는 디지털 객체 보존 모델을 제안하면서 기록을 “논리적이고 물리적이며 개념적 객체(logical, physical and conceptual objects)”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Thibodeau 2002, 6). 물리적인 객체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매체에 표지를 새긴 것”이고, 논리 객체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인식되고 처리되는 개체”이며, 개념적 객체는 “사람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객체이거나 업무처리를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식되고 처리되는 객체”를 의미한다. 전자기록을 물리적, 개념적, 논리적 개체의 집합체로 이해해야 많은 행위자(기록 생산자, 관리자, 아키비스트)에 의한 분산적인 통제를 신뢰할 수 있다. 더욱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프라를 통해 그러한 객체가 많은 플랫폼을 넘나들며 존재하는 환경에서 그러한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물질성에 대한 인식은 기록 보존의 토대”이며(Glaudemans,

Jonker & Smith 2017a) 더 나아가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이벤트를 고정을 통한 기록화하는 것 역시 물질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케틀라는 설치미술을 사례로 이를 설명한다.

〈그림 3〉 기록의 생성·보존과정과 물질성의 확보



디지털 설치미술과 같이 특정 시공간에 구속되어 있고 휘발성이 강한 예술작품의 경우 그 작품 앞에 선 관객의 감상 및 관람 행위 자체가 작품의 일부분이 되며, 이러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는 이벤트를 물질성에 기반하여 확보해야 한다(〈그림 3〉 참조). 케틀라에 의하면 “전체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많이 그 물질성을 포착”할 수밖에 없다(Glaudemans, Jonker & Smith 2017a). 또한 작품의 콘텐츠, s/w, h/w, 구조물 설치 공간 등 각 개체는 물론 개체간의 관계와 맥락을 남기는 작업 역시 물질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맥락, 구조, 내용에 관한 메타데이터와 기술이 추가됨으로써 논리적, 물리적, 개념적 구성체로서 기록이 생성·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을 정보로 보고, 구조나 매체를 중시하지 않는다. 어떤 구조나 매체를 취하든지 다만 그 내용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기록물관리에서는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구조와 매체가 결합된 물질(디지털기록의 경우 유체성은 갖지 않지만), 더 나아가 논리적, 물리적, 개념적 종합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유통되는 기록이 다르게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유통되는 문서 원문을 기록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고정성(fixity)

고정성은 기록이 생산될 때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고전적 기록학에서 기록의 고정성은 매우 확고한 원칙이었다. “정보는 유동적이며 불안정한 반면 기록은 고정되어 있다”는 표현에서와 같이 고정성을 기록과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는 학자도 있었다(Yeo 2018, ch.1). 특히 사법적 증거로서의 기록에 초점을 맞추는 서양 문서학에서 기록은 “안정된 내용과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Van Bussel 2017a). 그러나 기록의 고정성이 과연 디지털환경에서도 여전히 고수되어야 할 기록의 본질적 속성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기록연속체 모델을 주창한 호주의 학자들(McKemish나 Upward 등)은 기록이 항상 ‘되고 있는 과정(process of becoming)’에 있으며 결코 최종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주 역설하였다(Yeo 2018, 32-38). 캐나다의 아키비스트 자크 그리마르(Jacques Grimard 2005)는 “디지털 기록은 결코 정적이 아니며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영국의 아키비스트 발레리 존슨(Balerie Johnson)과 데이비드 토마스(David Thomas) 역시 “기록의 성격이 변화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은 동적이고 유동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기록과 보존기록

(archives)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Yeo 2018, 34).

킴벌리 앤더슨은 이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기록의 고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Anderson 2014). 그녀는 보존기록의 명백한 결점은 “물리적으로 획득된, 또는 ‘고정된’ 업무상 기록에 한정하여” 구성되는 것이라고까지 비판하였다. 고정성은 기록의 안정성과 무결성을 증가시키지만, 물리적으로 획득되지 않는 증거가 많다는 것이다. 증거로서의 다양한 관계는 물리적으로 획득되지 않으며, 물리적 획득에 대한 집중은 결과적으로 증거로서의 기록을 왜곡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녀는 생산 환경으로부터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옹(Walter Ong)의 이벤트 세계(event-world)에 비유한다. 옹은 이벤트 세계를 오브젝트 세계(object-world)와 구분한다. 오브젝트 세계는 주로 시각을 사용하며, 시간에 구속되지 않은 객체 탐구를 지향하는 반면 이벤트 세계는 청각을 포함하며 시간과 공간의 규정을 받는 사건에 집중한다. 물리적 획득을 위해서는 살아 있는 것과 역동적인 것을 불가피하게 배제해야 한다. 즉 스냅샷으로 변조되어야(translating)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역동적인 활동이 정지되면, 그것은 더 이상 역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의 정지된 견본일 뿐이다. 움직이는 이벤트를 고정되고 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려는 것은 ‘변조’인 것이다(Anderson 2014). 행위에 대한 동적인 재현은 기록관리의 또다른 과제가 될 것이며, 동적 재현의 개념이 현실 기록관리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학자 플로리디 역시 제프리 여의 “활동의 지속적인 재현”이라는 정의를 부분적으로 비판하여 이러한 정의가 ‘흔적’을 사상시키고 박제화된 재현을 야기한다고 비판한다(Glaudemans, Jonker & Smith 2017a).

그렇다면 유동적 성격의 이벤트를 동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벤트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기억의 영역에 남겨둔다면 이는 과거에 이루어진 특정 활동에 대한 증거로서 기록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이벤트의 유동성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는데, 이 역시 본질에서는 이벤트의 고정화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은 결국 오브젝트 세계로의 전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록의 고정성은 전통적 기록관리는 물론 디지털 기록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국제 표준에서나 많은 기록학자들은 고정성을 지지한다. 네덜란드의 아키비스트 반 뷔셀(Van Bussel)은 기록이 ‘불변의 자동차(immutable mobile)³⁾’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고정성은 기록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기록은 훗날 참조할 수 있어야 하고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금 재구축하기 위해 활용되기 때문이다. 고정성은 특히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기록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Bussel 2017b). 케틀라와의 대담 중 편집자는 고정성을 강조하면서 “(고정성은) 가령 설명책임성을 위해 필요하다. 백 년 후에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싶을 것이다. 그것이 아카이브의 존재 목적”이라고 밝힌다(Glaudemans, Jonker & Smith 2017a). 디지털의 유동적 시대에서 더욱더 지속적 표현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고정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존커(Jonker)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유동적인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 아키비스트는 기록 고정 대상 [기록으로 확정하여 고정할 지점](fixation points)을 찾고 있다. 우리는 순간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고정할 수 있으려면 그 어떤 것이 고정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무슨 내용이 고정되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정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지 명확해야 한다.”(Jonker 2017)

3) ‘불변의 자동차’는 “상이한 맥락과 장소에서도 형태와 기능이 그대로”이거나 “그렇게 재구축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Latour, 1990). Van Bussel 2017b에서 재인용.

고정되어야 하는 이유, 고정의 대상, 고정의 과정과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에릭 케틀라는 “기록의 객체(object)로서의 개념”을 우선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기록을 산출물(product)로서가 아니라 과정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기록관리시스템에 획득될 때에만 기록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나는 기록이 기록관리시스템에 획득 될 때만 기록이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데이터의 도처편재성에 있습니다. 무슨 데이터가 언제 기록이 되는가는 정책적 결정입니다.”(Glaudemans, Jonker & Smith 2017a)

데이터가 범람하는 환경에서 반 부셀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기록이 기록생산조직에 보존되든지 아카이브 리포지터리로 이관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고정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한다(Van Bussel 2017b). 무결성(기록이 조작될 수 없음), 진본성(기록에 요구되는 (원래의) 내용과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음), 통제가능성(기록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시험할 수 있음), 역사성(historicity, 기록의 내용, 맥락, 구조가 적절한 어느 때든지 재구축될 수 있음)의 유지이며, 이는 디지털 고문서학(Diplomatics) 방법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를 재정리하면 첫째, 기록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둘째, 내용과 연계된 구조와 맥락은 원래의 관계대로 재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금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은 고정의 대상으로 ‘기록’이다. 분산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와 같이 복잡한 정보환경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록인가? 존커는 어떤 정보가 기록(archival record)이 될 수 있으면 우선 ‘의미 있는 정보(meaningful information, MI)’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의미 있는 정보’는 맥락, 정보객체, 활동이라는 세 요소의 합

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록은 항상 의미 있는 정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의미 있는 정보가 모두 기록은 아니다. 의미 있는 정보는 우리가 그 정보가 기록이 되기를 원할 때에만 기록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어떤 의미 있는 정보가 “개인이나 조직의 환경에서 처리행위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기록으로 간주되며” 대개는 “행정적, 법적, 재정적 가치와 관련하여 기록 여부를 판정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무슨 데이터가 언제 기록이 되는가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말한 케틀라의 발언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다(Glaudemans, Jonker & Smith 2017a). 빅토리아 르뮤(Victoria Lemieux)는 “기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기록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Lemieux 2001, 91). 아멜리아 애커는 “무엇이 기록인가(What is a record?)”를 묻기보다 디지털 정보통신 인프라 속에서 “언제 기록이 되는가(When is a record?)”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Acker 2018).

제프리 여는 “어쩌면 우리는 ‘기록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말아야 하겠지만, 사람들이 특정 맥락에서 기록으로 식별하거나 인정하기 위하여 어떤 개체(entities)를 선택해야 할지는 물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Yeo 2018, 2-21). 즉 기록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조직의 활동목적과 환경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분산된 디지털환경에서 기록으로 ‘고정하여 관리할 개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정보객체를 기록으로 판단했다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객체 및 구성요소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존커는 <표 2>의 정보객체 요소를 중심으로 고정화를 설명한다. 기록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의 정보객체로 묶고 컨테이너에 담아야 한다고 본다. 컨테이너에는 정보객체와 메타데이터가 포함된다.

〈표 2〉 정보객체의 요소

요소	뜻
1) 내용(content)	객체를 통해 전달될 메시지/정보
2) 구조(structure)	메시지/정보의 형식(form)
3) 맥락(context)	객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 환경(setting)
4) 행동(behaviour)	메시지/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 (예 : 스프레드시트에서의 매크로 및 수식 기능, 하이퍼링크)
5) 기술(technology)	기능과 정보객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도구, 그리고 객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도구. 세 계층(제시, 송신/처리, 저장/고정)으로 구성됨.

※출처 : Jonker 2017.

그러나 이 모든 요소들을 스냅샷을 찍듯이 고정하거나 반드시 인캡슐레이션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ISO 15489-1 : 2016에 의하면, “기록의 맥락을 기록한 메타데이터는 획득시점에서 고정되어야 하고, 업무처리의 증거로서 보존되어야 한다(ISO 15489-1, 9.5). 물론 정보의 내용 자체는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지만, 구조, 맥락, 행동, 기술의 경우 메타데이터를 통해 생산 및 획득 시점의 상황과 관계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인 고정화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훗날 어떤 시점에서라도 원래의 내용, 구조, 맥락, 행동, 기술을 재구성할 수 있는 보존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이차적 고정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정의 대상설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평가 및 보존 영역에서 별도의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활동 재현의 메커니즘과 맥락

앞에서 밝혔듯이 기록이 표현하는 활동은 업무활동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위들을 포괄하며, 인간의 지시에 따라 기계장치가 수행한 활동도 포함된다. ISO 16175-3에서도 기록이 단순히 “데이터의 집적물이 아니며, 특정 사건(event)의 산물”이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때 사건은 기록의 생

산을 야기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활동은 어떻게 기록이라는 물리적 재현물로 표현되는가? 기록을 통해 우리가 활동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존커는 ‘주유’를 사례로 ‘의미 있는 정보(MI)’를 구성하는 3요소인 맥락, 정보객체, 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유라는 ‘활동’은 우선 자동차의 오일 탱크가 비었다는 신호에 따라 촉발되는데 이러한 신호를 일차적 ‘맥락’이라고 본다. 또한 주유과정에서 가격, 주유량 등이 표시된 주유기의 디스플레이, 종이 영수증 등이 정보객체에 해당한다(Jonker 2017).

“첫째, 정보는 맥락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를 처리하려면 구조화된 형태의 정보객체에 담겨 있어야 한다. 정보가 존재하게 되려면 사건이나 처리행위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여러 가지 방식의 교환이나 소통은 사건이나 처리행위의 일부다.”(Jonker 2017, 79)

여기서 맥락은 정보가 생겨나고 ‘사용’되는 환경(setting)을 의미한다. 정보는 다른 맥락에서 항상 재사용될 수 있지만 이때 ‘사용’은 생산 환경에서의 일차적 사용을 의미한다. 활동은 업무처리활동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 중에 정보와 정보객체에 일어나는 일을 의미한다. 의미 있는 정보를 구성하는 세 요소는 반드시 삼위일체처럼 불가분의 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⁴⁾

‘의미 있는 정보’로서 기록은 어떤 활동을 표현하지만, 정보객체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맥락이다. 가령, 하나의 활동은 여러 가지의 재현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사회회의 공식 회의록, 비서의 속기 노트, 회의 중간에 기록한

4) 만일 이 세 요소 중 하나나 둘이 없다면 의미 있는 정보는 있을 수 없다. 쓸모없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는 인위적으로 부재하는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새 버전이 생산된다. 이러한 새 버전은 원래 상황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보여주지만, 이는 재구축된 것(reconstruction)이며, 따라서 이 정보는 결코 원래 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다(Jonker 2017, 80).

이사회 위원의 메모는 모두 같은 활동의 재현물이지만, 다만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 각각의 기록의 맥락에 대한 지식은 그 기록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다(Yeo 2007).

흔히 활동을 기록의 생산의 ‘맥락’이라고 보는데, 존커나 제프리 여의 개념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업무활동 자체가 곧 맥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Brenda Derwin(1997)에 의하면, 맥락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이다. 맥락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록학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다. 그러나 기록학 분야 내에서도 맥락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해석 프레임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반 뷔셀은 ‘맥락’과 ‘출처’의 혼란스러운 사용에 문제를 제기한다. 반 뷔셀은 그의 아카이브 모형(Archive-As-Is Model)에서 두개의 중요한 원칙으로 ‘출처의 원칙(Principle of Provenance)’과 ‘맥락의 원칙(Principle of Context)’을 적용한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자들이 사회적 출처 등과 같이 출처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출처의 본질에서 벗어나며, 출처와 맥락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출처는 어디까지나 기록의 생산과 관련되며, 출처주의는 오직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고 본다. 첫째, “기록(혹은 기록 집합체)이 생산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생산 당시까지 추적될 수 있고, 둘째, 기록이 포함된 기록결합체(archival bond)가 재구축되는 것”이다(Duranti 1997; Van Bussel 2017b에서 재인용). 따라서 출처주의는 “기록의 생산 및 이동 이력에 관한 메타데이터가 보존되고, 기록의 내적 구조가 반드시 항상 재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Van Bussel 2017b).

이런 점에 볼 때 디지털 데이터 환경에서 출처주의를 적용하려면 데이터 계보(data lineage)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터 계보는 출처에 대한 컴퓨터과학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데이터 객체가 파생된 이력(ownership history)을 기술한 것이다. 기록은 몇 가지 정보객체의 집합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객체는 여러 장소에 저장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문서, 스프레드시트, 이메일(의 일부)일 수도 있고, 조직의 경계를 넘나들 수도 있으며, 한 개 이상의 아카이브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그 출처(origin)와 이동 이력(logistic history)이 모호해질 수 있다. 물리학과 천문학 분야의 Chimetra, 생물학 분야의 myGrid, 화학 분야의 CMCS처럼 분산된 환경에서 출처를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발되기도 했는데, 기록관리에도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컴퓨터과학에서 주안점이 개별 아이টে에 있다면 기록학에서는 아카이브 또는 기록의 집합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Van Bussel 2017b, 53).

그런데 이러한 ‘출처’만으로는 그 기록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황 맥락(situational context)’이 필요하다. 기록의 맥락은 기록을 만들어낸 사회적 상황(행위나 업무처리, 사안, 업무과정 등)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우선 획득해야 할 맥락은 ‘개별 기록의 상황 맥락’이다. 반 뷔셀은 여러 문헌의 내용을 종합하여 상황 맥락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Van Bussel 2017b, 51).

- 맥락은 과거에 있다.
- 맥락은 정확한 문서화와 정의를 필요로 한다.
- 맥락은 의미부여(sensemaking)를 위하여 기록과 상황을 캡슐화한다.
- (현상학적 관점에서) 맥락은 복잡한 사회적 현실이지만 (실증주의 자적 시각에서 보면) 단순히 사회적 현실의 표현물로서 단순화된 메타데이터 구축물로 획득된다.
- 맥락은 업무 프로세스, 정책, 의사결정, 산출물, 행위, 업무처리와 같은 사회적 상황의 추적과 재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다.

상황 맥락은 어떤 상황 속에서 생산된 기록의 의미를 제공한다(Van Bussel 2017b, 51). 사건, 업무과정, 의사결정 등의 상황에서 의미를 추출하기 위

해서 이용자들은 기록을 생산한 각 조직의 정책, 의사결정, 산출물, 행위, 업무처리에 대한 지식을 수집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통해서도 맥락을 위한 지식을 획득한다. 기록의 상황은 맥락 메타데이터로 획득되는데,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통해 기록과 관련된 특정 행위나 업무처리의 이미지를 재현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해당 기록과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를 가지며(Van Bussel, 2016), 이를 통해 상황 맥락이 기록에 고정된다. 상황 맥락은 기록이 활동의 재현물로 기능할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 중의 하나다. 존커는 상황 맥락과 유사한 의미로 ‘일차 맥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보가 비롯되거나(originated) 접수된 맥락”이며 활동을 촉발시킨 트리거나 근거(warrant) 등 9가지의 필수 요소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차적 맥락은 이미 존재하는 정보가 재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원래의 일차적 맥락 바깥에서 사용된 것이다(Jonker 2017).

반 뷰셀이 제시한 ‘맥락의 원칙’은 기록학에서는 다소 새로운 원칙이다. “맥락이 전부다”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기록학에서는 맥락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거나 출처주의가 맥락의 획득을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다분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출처에 따른 정리가 ‘맥락’을 보존하고 “이를 통해 기록의 의미가 보존된다”는 식의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기록이 어디에서 왔는지(source)와 내적 구조, 계보(lineage)를 보존”하지만 그 맥락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특히 서구 문서학(Diplomatics)에서의 맥락 분석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비판한다(Van Bussel 2017a). 전통적으로 문서학의 주요 관심사는 ‘기록’이고 기록에 포함된 모든 요소였다. 기록의 내용과 함께 기록과 사람, 기능, 절차, 행위, 기록을 생산한 시스템 간의 관계도 분석의 대상이었지만 주로 사법적 증거를 위한 법적 맥락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uciana Duranti 등이 새롭게 해석한 디지털 문서학에서 더 이상 사법체계만을 기록의 맥락

으로 보지 않고, 확장된 범위의 맥락(법적, 행정적, 출처적, 절차적, 기술적, 문서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지만(Duranti 2010, 1596), 그들은 여전히 법적 맥락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Yeo 2018; Van Bussel 2017a).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문서학은 맥락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기록을 만들어낸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조직적 환경을 이용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려면 포착해야 할 맥락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Van Bussel 2017a).

반 뷰셀의 ‘맥락의 원칙’에서 맥락은 환경 맥락(environmental context)으로 Chris Hurly(1995)가 주창한 ‘환경 기능(ambient function)’과 유사하다. 이때 맥락은 기록 자체는 아니며, 기록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변 환경(environmental circumstances)이다. 맥락이 “비록 기록의 의미나 해석을 좌우하지만”(Duranti 1997b, 217), 기록의 내적 요소는 아니며 기록이 만들어진 법적·규제적 환경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맥락은 메타데이터로 정의되고 기술되지만, 이러한 맥락을 메타데이터로 재현하는 것은 극도로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다.

요약하자면, 출처는 아카이브의 환경이 아니라 기록과 기록 요소들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기록의 내적 구조를 의미하며 기록의 계보이다. 그러나 기록의 의미와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은 ‘출처’가 아니라 ‘맥락’이며 이는 어렵지만 메타데이터로 획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메타데이터만으로 획득할 수 없는 맥락도 있다. 데이터 처리에 사용된 알고리즘이다. 어떤 정보객체가 생산되고 이용되는 환경이 맥락이라면 여기에는 정보의 처리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Jeurgens 2017). 유르겐스(Jeurgens 2017)는 2015년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데이터만으로는 설명책임을 다하기 어렵고, 조작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정보와 데이터를 모두 남겨야 한다고 하였다⁵⁾.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에서는 그

데이터가 어떤 맥락에서 생산되고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알아야만 설명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니콜라스 디아코풀로스(Nicholas Diakopoulos)는 공공업무에 사용된 소스 코드를 공개 청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정보자유법을 넘어 ‘정보처리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Processing Act)’을 제안하였다. 정부기관의 알고리즘을 통해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벤치마크 데이터세트를 제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Jeurgens 2017).

존커가 제안한 정보객체의 일부인 ‘행동(behaviour)’이 의미하는 기능(스프레드시트에서의 매크로 및 수식 기능, 하이퍼링크 등)은 기록의 내부요소이지만,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는 기록의 내부가 아니라 기록 바깥에 존재하면서 기록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이다.

4) 재현의 신빙성(trustworthiness)

그렇다면 기록이라는 재현물은 과연 활동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활동의 재현물로서 기록은 얼마나 믿을 만한가? ISO 15489-1에서는 활동을 얼마나 잘 재현하는지를 ‘신뢰성(reliability)’으로 표현한다. 신뢰성 있는 기록은, “a) 기록이 입증하고자 하는 업무 처리행위나 활동, 사실 등의 완전하고 정확한 표현물(representation)로서 해당 기록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고, b) 이후의 업무 처리나 활동 과정에서 의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ISO 15489-1 : 2016, 5.2.2.2). 이를 위하여 “기록은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에 의해서, 혹은 업무처리를 위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시

5) 이와 관련하여 ‘자동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설명가능한 알고리즘을 위한 프레임워크(a general framework for accountable algorithms in automated decision-making processes)’를 개발한 조슈아 크롤(Joshua Kroll)은 설명책임을 위해서는 그러한 자동적 과정을 관장하는 사회적, 법적 및 정치적 구조가 의도한 바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은 검토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Jeurgens 2017).

시스템에 의해서,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나 혹은 바로 이후에 생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학자들은 신뢰성이 그 기록에 담긴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반 뷰셀은 그의 ‘Archive-as-Is’ 모델에서 몇 가지 가정 (assumptions)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아카이브는 완전하지도 않고, ‘진실’이 담긴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정보원도 아니다”라는 것이다(Van Bussel 2017b, 46). 기록이 ‘프로세스에 묶인 정보(process bound information)’ (Cook 1997, 48)이고, ‘조직이나 개인 활동의 퇴적물(sediment)’(PIVOT 보고서 1994)이기는 하지만, 기록은 본질적으로 “선택적으로 조성된 구조물 (constructed bodies)”이다(Van Bussel 2017b). 조직 구성원들이 생성하는 모든 정보가 기록으로 획득되지도 않으며, 획득된 기록이 모두 보존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아카이브는 주로 과거를 재구축하는 데에(예를 들면 설명책임성을 위해) 사용된다. 아카이브에는 절차와 업무 프로세스, 법률, 사회적 환경에 의해 확립된 모든 편견과 도덕률, 선입관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카이브는 주관적인 구축물이다. 따라서 그렇게 남겨진 기록은 기록을 생산한 조직이 활동했던 현실의 왜곡된 관점만을 전달할 수도 있다. 즉 남아있는 기록이 조직의 모든 활동을 재현하지 못하며, 활동 당시의 현실을 “진실하게 말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Van Bussel 2012).

정보학자 플로리디(Floridi)⁶⁾와 기록학자 케틀라(Ketelaar)의 대답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플로리디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보관자로서 아키비스트가 더 능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Glaudemans, Jonker & Smith 2017b). 반면 케틀라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성한 ‘탈진실적 트윗’은 신뢰성 있는, 진짜 대통령기록”이며 진실한 기록만을 관리

6) Luciano Floridi : 옥스퍼드 대학 (Oxford University) 정보철학과 교수. 앨런 튜링 연구원(국립데이터과학연구원)의 데이터 윤리 그룹 의장.

7) ‘탈진실(post-truth)’은 “여론을 형성하는데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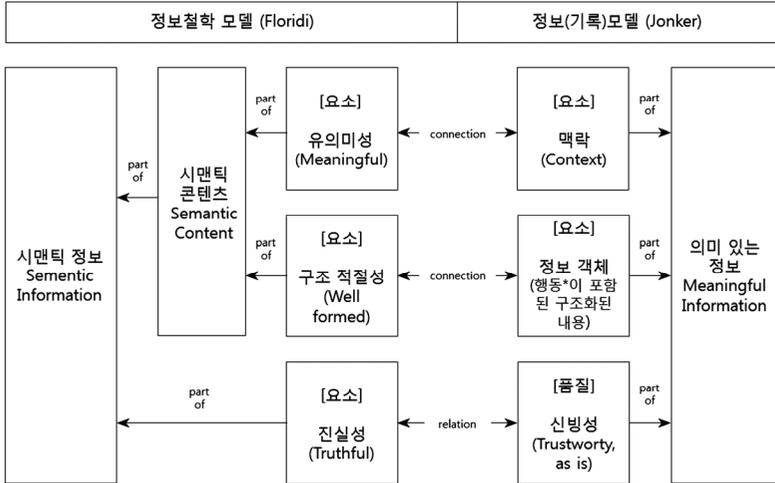
해야 한다면 “네델란드 국가기록관이 소장한 기록의 반은 갖다 버려야” 한다(Glaudemans, Rienk & Frans 2017a). 기록관리가 “기록 객체(object)에 책임을 지지 그 내용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보학자는 “객체의 신빙성(trustworthiness)보다 내용의 진실성(truthfulness)에 초점”을 맞춘다(Glaudemans, Rienk & Frans 2017b).

정보학과 기록학에서의 차이점을 더 확인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존커의 정보모델과 플로리디의 모델을 살펴보았다. 존커는 정보가 갖추어야 할 품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맥락에 토대를 둔 유의미성, 둘째, 정보객체의 형식에서 볼 수 있는 구조화, 셋째, 맥락이 기술되는 방식, 정보객체가 구조화되고 고정되는 방식, 활동이 실행되는 방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trustworthy)이다. 이 모든 품질은 “보존기록(archival record)을 이루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이지만 신빙성 등은 “파생된 품질”이다(Jonker 2017). 반부셀은 기록의 신빙성이 고정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품질이라고 보았다. 앞에서 밝혔듯이 고정성은 기록이 조작될 수 없고(무결성), 기록의 원래 내용과 구조를 제시할 수 있으며(진본성), 기록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시험할 수 있고(통제가능성), 기록의 내용, 맥락, 구조가 적절한 어느 때든지 재구축될 수 있도록(역사성) 하는 것이다(Van Bussel 2017b).

존커는 <그림 4>를 통해 자신의 정보모델과 플로리디의 정보철학 모델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 양자의 큰 차이는 진실성과 신빙성에 있으며, 정보모델에서는 정보의 진실성이 의미있는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기록모델로 볼 수 있는 존커의 모델에서는 진실성이 아니라 신빙성이 들어가 있고, 이를 기록의 요소가 아니라 파생 품질로 보고 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영향을 주는 상황”을 의미한다(옥스퍼드 영어사전).

〈그림 4〉 두 모델의 차이 : 정보의 진실성과 기록의 신빙성



기록학자 케틀라는 “정보전문가들이 정보의 진실성을 추구한다면 맥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Glaudemans, Rienk & Frans 2017a). 조직에서 정보가 “특정한 맥락 안에서 생산되고”, 이러한 맥락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기록학적 개념을 수용한다면 정보학자들이 추구하는 정보의 진실여부를 가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맺음말

기록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며, 특히 전송과 접수가 될 새 없이 이루어지고 분산 관리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의 본질적 개념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에

서는 기록의 개념과 본질과 관련된 이론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논리적으로 볼 때 기록이 곧 증거이거나 정보라는 정의는 적절하지 않으며 “...의 증거”나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의 증거”나 “...에 관한”과 같이 기록과 정보, 기록과 증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맥락이다. 맥락은 기록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록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기록이 “...의 증거”나 신빙성 있는 정보객체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고정적 재현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고정화는 정보 내용의 불변성을 유지하고, 메타데이터를 통해 생산 및 획득 시점의 상황과 관계에 관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훗날 어떤 시점에서라도 원래의 내용, 구조, 맥락, 행동, 기술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디지털 기록의 물질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기록이 논리적, 개념적, 물리적 종합체라는 전제는 여타의 정보관리나 데이터관리와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다섯째, 기록이 활동의 재현물이 될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은 정보객체와 그 정보객체가 생산·접수된 상황 맥락이 연계된다는 것이다. 상황 맥락에는 개별 기록이 생산되는 조직이나 법규 환경, 활동을 촉발시킨 트리거나 근거 등이 포함되며 이는 메타데이터로 획득된다.

여섯째, 활동의 재현물로서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맥락 외에도 보다 넓은 범주의 환경맥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개별기록을 넘어 기록집합체가 생산되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법규 환경이나 조직문화, 기술환경 등이 포함된다.

일곱째, 출처와 맥락은 구분되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의 연구에서 전통적인 출처의 의미를 확장하면서 출처와 맥락이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양자를 존중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다른

의미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주의는 “기록의 생산 및 이동 이력에 관한 메타데이터가 보존되고, 기록의 내적 구조가 반드시 항상 재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데이터 환경에서 출처주의를 적용하려면 데이터 계보(data lineage)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덟째, 기록의 신뢰성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주관적인 평가선별과정을 거쳐 기록의 일부만 남겨지기 때문에 기록이 조직의 모든 활동을 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기록관리에서는 ‘정보의 진실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보객체가 가급적 활동을 충실히 반영하고(ISO의 신뢰성 요건에 따라), 맥락 및 구조와의 고정적 결합성을 유지하는 전략에 근거하여 ‘신빙성’(trustworthiness)을 추구한다.

아홉째, 기록을 일정한 품질을 갖춘 정보객체(예를 들어 ‘의미있는 정보객체’)로 보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록학적 방법론이 데이터 범람의 시대의 정보관리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자들이 구조와 맥락을 갖춘 ‘의미있는 정보’가 기록의 기본 요소이지만, 의미 있는 정보가 모두 기록은 아니며, 기록을 규정하는 것은 각 조직이 처한 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기록관리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편익을 가장 중시하느냐에 따라 관리대상으로서의 기록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것이다. “공공기록관리에서 ‘기록의 성립조건’은 기록 유형이나 형식도 아니고, 등록이나 탑재여부도 아니며, 업무와의 관련성이며 설명책임을 충족시키는 데에 필요한지 여부”(설문원 2018)라고 주장한 것도 설명책임성이라는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기록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에 대한 정책적 정의를 둘러싼 분석은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설문원 2018.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기록학연구』, 55, 5-38.
- 정동열, 조찬식. 2007. 문헌정보학 총론.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KS X ISO 16175-3, 문헌정보-전자사무환경에서 기록관리 원리 및 기능요건-제3부 : 업무시스템의 기록관리 지침과 기능 요건.
- Acker, Amelia. 2017. When is a record? : A research framework for locating electronic records in infrastructure. In : Research in Archival Multiverse, Ch. 9. Anne J Gilliland, Sue McKemmish and Andrew J Lau. Clayton ed, Monash University Publishing, 288-323.
- Anderson, Kimberly D. 2013. The footprint and the stepping foot : archival records, evidence, and time. Archival Science 13(4).
- Brothman, Brien. 2002. Afterglow : Conceptions of record and evidence in archival discourse. Archival Science 2, 311-342.
- Cook, T. 1997.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7-63.
- Dervin, B. 1997. Given a context by any other name. Methodological tools for taming the unruly beast. In : Information Seeking in Context. P. Vakkari, R. Savolainen, B. Dervin eds, London : Taylor Graham, 13-38.
- Duranti, Luciana. 2002. The concept of electronic records. In : Preservation of the Integrity of Electronic Records, Chapter 1. Duranti, Luciana; Eastwood, Terry and MacNeil, Heather. e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9-22.
- Duranti, Luciana. 2010. Diplomats. In :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3rd ed, M.J. Bates and M.N. Maack eds, Boca Raton : CRC Press.
- Duranti, Luciana. 1997. The archival bond. Archives & Museum Informatics, 11(3-4), 213-218.
- Jeurgens, Charles. 2017. Threats of the data-flood. An accountability perspective in the era of ubiquitous computing. In : Archives in Liquid Times, Edited by : Frans Smit, Arnoud Glaudemans and Rien Jonker. Den Haag : Stichting Archiefpublicaties, 196-210.
- Dearstyne, Bruce W. The Archival Enterprise.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3.
- Duranti, Luciana. 2002. The concept of electronic record. In : The Preservation of the Integrity of Electronic Records. Luciana Duranti, Terry Eastwood, Heather MacNeil eds. Dordrecht : Kluwer Academic Publishers, 9-22.

- Glaudemans, Arnoud; Jonker, Rienk & Smith, Frans. 2017a. Beyond the traditional boundaries of archival theory : An Interview with Eric Ketelaar. In : Archives in Liquid Times. Frans Smit, Glaudemans, Arnoud & Jonker, Rienk eds. Den Haag : Stichting Archiefpublicaties, 294-305.
- Glaudemans, Arnoud; Jonker, Rienk & Smith, Frans. 2017b. Documents, archives and hyperhistorical societies : An interview with Luciano Floridi. In : Archives in Liquid Times. Frans Smit, Arnoud Glaudemans and Rienk Jonker eds. Den Haag : Stichting Archiefpublicaties, 306-321.
- Hurley, C. 1995. Ambient functions : abandoned children to zoos. *Archivaria*, 40(Fall), 21-39.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1997. Guide for Managing Electronic Records from an Archival Perspective. Paris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 ISO 15489-1 : 201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Records management—Part 1 : Concepts and principles.
- Jenkinson, H. 1984. Reflections of an archivist. In : Daniels M, Walch T (eds) A Modern Archives Reader : Basic Readings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19-20.
- Jonker, Rienk. 2017. A perfect match? Connecting partners in the labyrinth of information. In : Archives in Liquid Times. Frans Smit, Arnoud Glaudemans and Rienk Jonker eds. Den Haag : Stichting Archiefpublicaties, 72-91.
- Kahn Consulting, Inc. 2013. Information Governance : How IG helps you meet corporate responsibilities.
- Kahn, Randolph & Blair, Barclay. 2009. Information Nation : Seven Keys to Information Management. Wiley Publishing.
- Lemieux V. 2001. Let the ghosts speak : an empirical exploration of the “nature” of the record. *Archivaria* 51, 81-110.
- O’Toole, James M. 1993.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s* 56, 234-55.
- Penn, Ira A; Pennix, Gail & Coulson, Jim. 1994. Records Management Handbook, 2nd ed. Aldershot, England : Gower, 1994.
- RSD. 2014. Defining Information Governance Policies. Retrieved 2015. 10. 6. www.rsd.com.
- Shepherd, Elizabeth & Geoffrey Yeo. 2003. Managing Record : A Handbook of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 Facet Publishing.

- The State Records Authority of New South Wales, Website. Retrieved 2016. 1. 20.
- Thibodeau, Kenneth. 2002. Overview of technological approach to digital preservation and challenges in coming years. In : The State of Digital Preservation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3-31.
- Van Bussel, G. J. 2012. Reconstructing the past for organizational accountability. The Electron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valuation, 15(2), 127-137. Retrieved 2018. 12. 1. from www.ejise.com.
- Van Bussel, G. J. 2017a.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Archive-As-Is', an organization oriented view on archives, Part I. Setting the stage : Enterprise information management and archival theories. In : Archives in Liquid Times. Frans Smit, Arnoud Glaudemans and Rienk Jonker eds. Den Haag : Stichting Archiefpublicaties, 16-41.
- Van Bussel, G. J. 2017b.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Archive-As-Is', an organization oriented view on archives, Part II. An exploration of the 'Archive-As-Is' framework. In : Archives in Liquid Times. Frans Smit, Arnoud Glaudemans and Rienk Jonker eds. Den Haag : Stichting Archiefpublicaties, 42-71.
- Yeo, Geoffrey. 2007. Concepts of record (1) :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The American Archivist 70(Fall/Winter 2007), 315-343.
- Yeo, Geoffrey. 2018. Records, Information and Data : Exploring the Role of Record -Keeping in an Information Culture. Facet Publishing.